

프랑스의 공기업 규제 관련 법제

I. 들어가며

프랑스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산업재정 분야에 걸친 기업의 국영화 가속화 속에 1983년 직장인 4명 중 한명이 국영기업에 근무할 정도로 많았던 프랑스의 국영기업 수는 산업 전반에 걸친 국영기업의 민영화 현상 속에 2006년에 들어 845개로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1986년 이후 두 차례 대규모 민영화와 1997년 이후 좌파 정부에 의한 민영화 등 세 번의 민영화 과정을 거쳤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에서 민영화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규제완화라든가 시장구조의 변화 등은 민영화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프랑스의 민영화 대상 기업 선정에 있어 경쟁부문의 공기업¹⁾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86년

「민영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영화 대상 65개 기업 모두와 1993년 개정된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1개 기업들 중 에어프랑스나 공파니제네랄마리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부문의 공기업들이다. 프랑스의 공기업은 유럽연합법이나 비교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총제적인 용어로서 상당히 이질적인 경제적 법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개별 주주 또는 대주주인 공기업을 뜻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은 비교섭적 편무 행정법규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은 로마조약과 최근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이 특정 조건하에 자유경쟁 관련 유럽연합법의 적용제외를 허락하는 경제공익업무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유도하는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럽연합법이 강요하는 공기업의 독점 개방압력 아래 힘을 잃게 되었다.²⁾

- 1) 경쟁부문의 공기업이란 민간부문과 대등한 조건하에서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은행, 금융회사, 상공업부문의 기업, 보험회사를 들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 제도”, 2008 보고서 참조).
- 2) 「유럽연합법」 제86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유경쟁 관련 규정 적용제외의 근거를 확실히 증명하는 경제공익업무 운영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조약 체결 시 도입된 제16조는 경제공익업무의 개념을 유럽연합법위로 확대시켰다. “제73조, 제86조, 제87조에 위반되지 않고, 경제공익업무가 유럽연합의 공통의 가치 중 하나로서, 유럽연합의 영도적·사회적 일관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참작하여,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 안에서, 본 조약의 적용가능 범위 안에서, 이 업무가 실행가능 조건과 원칙의 기반에서 운영되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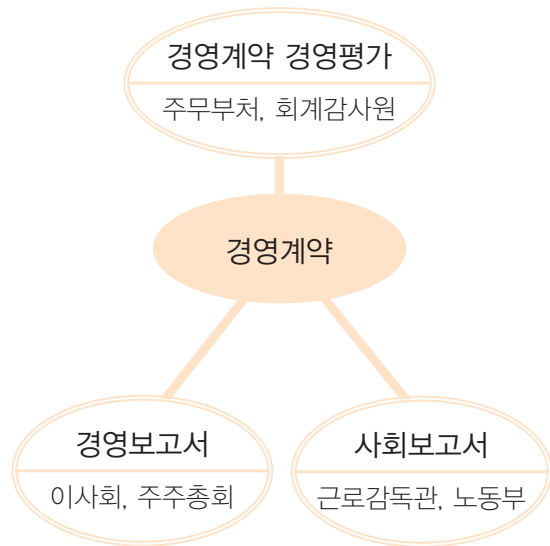
최근 프랑스는 공기업 평가제도에 과거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무부처가 간접적인 형태로 경영을 감시 및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공기업 관할 기구인 프랑스 국가투자청(APE)의 경우 약 55개의 상업성을 띠고 있는 공기업을 집중 관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의 감시 및 감독을 확대하여 경영에 개입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상업성을 띠고 있어 민영화 를 해야 하는 공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이를 관할하고 있는 APE는 이들 기업을 공기업으로 관리하기보다 민영화 등 개폐와 매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기업의 분류 중 시장형·준시장형의 공기업의 경우도 APE관할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성이 짙어 민영화의 가능성이 큰 기업이 많다. 따라서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써 프랑스의 APE의 계약을 통한 관리와 상시적인 컨설팅 및 조언 등의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1992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를 포함한 정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02년까지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기

획위원회의 평가는 중지되었으며 기존의 평가는 대폭 축소되어 회계감사원의 평가를 제외하고 어떠한 형태의 경영평가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경영계약을 기본으로 사회보고서와 경영보고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경영계약을 통해 체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계획과 추진에 대해 공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통제 활동은 기업별 제출 보고서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림 1〉 프랑스 공기업의 경영평가³⁾



출처: 박기찬,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특성 비교, 경영교육연구 제12권제2호, 2008, 23~54쪽 그림 재인용.

3) 프랑스 정부는 1967년부터 공기업 관리의 기본 틀로써 정부와 공기업 간에 경영계약 체결을 설정하였다(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 I”, 2010, 158쪽).

II. 프랑스 공기업의 개관

1. 프랑스 공기업의 현황

APE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기업은 대표 공기업 및 국가가 통제 또는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업성이 강한 기업 및 정부의 지원 등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APE 관할 공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52개 기관이며, 프랑스 통계청 2011년도 연차보고서 기준 대표 공기업은 55개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867개 중 APE관할 공기업과 일치하는 기업은 모두 34개로 나타났다으며, 나머지 833개 기관 중 65개는 34곳의 APE 관할 공기업의 자회사이다. 또한 APE 관할 공기업 중 통계청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1개 공기업에는 국영철도회사(SNCF), 에어프랑스(Air France),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 등이 있다.

2. 프랑스 정부의 재정상태 추이

2012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98.2 billion 유로 적

자를 나타냈으며, 이는 GDP의 4.8%에 달하는 수치이다. 2011년에 비해 빠르게 지방정부의 적자가 증가면서 공공적자는 주로 국가와 사회보장 부분에 대하여 낮은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년도 대비 2012년 세금 부담은 GDP의 45%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채의 비율은 GDP 4.4%중 2%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⁴⁾

〈표 1〉 프랑스 공기업의 정부 지분율⁵⁾

기업명	정부 지분율	산업 종사 분야
EDF	82.8%	에너지
GDF	79.78%	에너지
AREVA	84.19%	에너지
AIR FRANCE KLM	18.57%	운송
FRANCE TELECOM	32.45%	통신
THALES	27.30%	방위/ 항공
SAFRAN	30.85%	항공/ 우주
ERAMET	26.25%(2006년)	에너지
RENAULT	15.01%	자동차
EADS	15.04%	방위/ 방위
ADP	68.39%	운동 서비스
STMicroelectronics	10.9%(2006년)	반도체
CNP Assurance	1.18%(2006년)	보험

4) 프랑스 통계청(INSEE), 2012년도 통계자료 참조.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앞의 보고서, 118쪽 <표> 주식 상장회사 정부 지분율 재인용.

〈표 2〉 재무와 부채비율 비교표

국민총생산의 비율(%)	2009	2010	2011	2012
재정적자	-7,5	-7,1	-5,3	-4,8
공공부채	79,2	82,4	85,8	90,2
순공공부채	72,0	76,0	78,7	82,4
공공이익	49,2	49,5	50,6	51,8
공공지출	56,8	56,6	55,9	56,6
공제지출	42,1	42,5	43,7	45,0

1. 마스트리히트 조약
 2. 공공부채는 고지한 부채와 동일한 마이너스 특정 자산임
-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comptes nationaux, base 2005.

3. 프랑스 공기업의 매출액

프랑스 통계청은 공공기관 전체를 공기업으로 보고 통계를 작성하여 2012년 기준 공기업은 867개이며, 공기업 종사인력은 783,400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공기업의 부문의 외형적 규모 및 국민경제면에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⁶⁾ 프랑스의 공공기관 중 정부가 자본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직접 통제하는 기업은 전체 중 92개로 나타나고 있다.⁷⁾ 프랑스의 각 분야별 주요공기업의 2013년도 매출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13년 주요공기업 매출액

	2013		
	거래당(1) (백만 유로)	당기 순이익(1) (백만 유로)	직원 수(2) (천 명)
GDF Suez (3)	89,300	-8,909	178.6
EDF	75,594	3,755	154.9
Airbus Group (ex EADS) (4)	59,256	1,475	144.1
Orange	40,981	2,133	159.5
Renault (4)	40,932	695	121.8
SNCF (4)	32,232	-162	244.6
Air France - KLM	25,520	-1,818	96.0
La Poste	22,167	635	266.4
Safran	14,490	1,415	66.3
Thales (4)	14,194	573	65.2
Areva (4)	9,240	-423	45.3
Réseau Ferré de France (4)	5,690	-60	1.6
RATP (4)	5,143	284	56.3
DCNS	3,358	104	13.5
France Télévisions	3,033	nd	10.7
Aéroports de Paris	2,754	305	9.0
Française des Jeux	1,500	133	1.7
Nexter Systems - GIAT Industries	804	74	3.8

6) Insee Première n° 1500, mai 2014, P. 5.
7) Insee Première n° 1500, mai 2014, P. 7.

Radio France	641	nd	4.2
LFB (Laboratoire Français de biotechnologie)	477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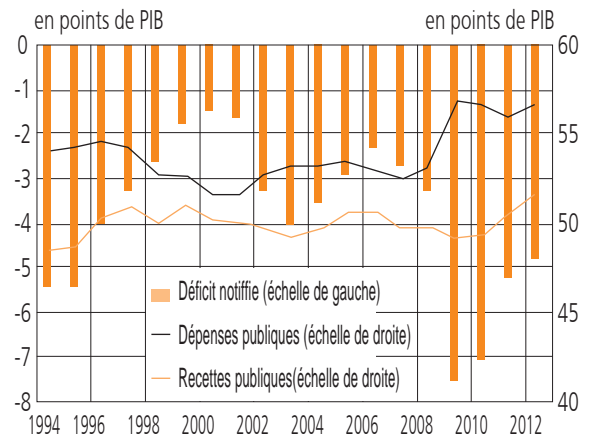
nd: 자료 없음
 (1): 수지계산 대차대조표
 (2): 정규직원
 (3): 실제 연간평균
 (4): 12월 31일 기준

지역: 프랑스

출처: 프랑스국가투자청, L'État actionnaire, rapport 2014.

위의 <표 3>과 같이 프랑스의 주요 공기업들도 세계 경제흐름을 반영하여 매출액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기의 악화와 환율의 감소로 전체 매출액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위하여 주요 공기업 중 민간시장에 맡길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민영화를 시킬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2> 1994년~2012년도 공공지출과 수익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comptes nationaux, base 2005.

4. 프랑스 공기업의 지배구조

프랑스 공기업의 형태는 공사형 공기업과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사형 공기업은 설립근거로써 공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기능, 권한, 기관의 구성, 제약조건 등을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즉, 공사형 공기업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형태에 해당하며, 영조물법인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영조물법인은 프랑스 공기업 형태 구분에서 나뉜 공사형 공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직원의 대부분이 사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단일기관제 방식에 의

8) Rémi Rouquette, Dictionnaire du droit administratif, Le Moniteur, 2002, p. 309.

해 지배구조가 설계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정부 주도로 구성되고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최고경영자인 사장은 정부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프랑스 공기업의 이사회 임원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2005년부터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사회 임원을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 비율은 여전히 같으며 그 중 3분의 1은 노동자 대표, 다른 3분의 1은 정부 대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독립된 경영진으로 구성하고 있다.⁹⁾

5. 프랑스 공기업의 노사관계구조

프랑스의 공기업 내부의 노사관계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이 선호하는 교섭 상대이다. 기업임원단의 중재는 기업의 지위에 관련된 기초적 문제들이 관건일 때처럼 극심한 분쟁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곳과 합의된 약속의 가치와 힘이 불분명해졌다. 또한 정부는 목표를 절대 명확히 표명하지 않고 각 정부마다 예정된 개혁을 사회적 보상으로 탈바꿈하면서 조금씩 개혁의 결과 및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완곡한 정책이라고 평할 만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공기업의 자본개방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프랑스가스공사(GDF)의 자본개방이라고 언론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지난 프랑스 가스공사(GDF) 자본의 소수 개방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등장하였고, 이에 프랑스 공기업 노조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프랑스 가스공사(GDF)가 민영화되는 것이 노조에 의해 받아들여져 해당 법률안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법률안이 철회된 것이지만 정부가 민영화를 받아주지는 않고 있다.

6.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배경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공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었으며, 민영화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¹⁰⁾ 프랑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시장경제에 노출시켜 기업에게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

9) 한국조세연구원, “공기업 지배구조-2005년 이후 OECD 회원국에서의 변화와 개혁”, 2011, 22쪽.

10)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 I”, 2010, 172쪽.

다. 또한 공기업의 매출대비 적자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부실공기업의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2) 민영화의 특징

프랑스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으로는 먼저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경쟁부문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민간 부문과 대등한 조건하에서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하는 은행, 상공업, 보험회사 등이 주로 포함된다. 또한 공공서비스 기업들은 민영화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공서비스 수행 기업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혜택으로 인한 민영화 여건이 미성숙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철도·운송·통신 분야와 같은 특정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애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영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민영화 방식으로 자산의 완전 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 혹은 부분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시행횟수에 따른 일회적 민영화와 단계적 민영화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식시장에 직상장을 통한 장내 매각

과 안정위주 구성, 종업원지주제,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통한 장외 매각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경우 완전 민영화의 대표적 경우로서, 장내 매각과 핵심 주주 및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장외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III. 프랑스 공기업 규제 관련 법제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공공기관은 개념적으로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공공서비스’라고 정의되어 왔으며,¹¹⁾ 프랑스 공법에서 국가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공공서비스’라는 법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 국내법에서 공기업을 정의한 것은 2004년에 이르러 유럽연합 법령인 ‘국가와 공기업 간 재정관계 투명성에 관한 지침’ 80/723/CEE를 국내법에 적용하면서이다.¹²⁾ 프랑스 정부 내 공기업 규제 법제는 크게 공기업 통제수단으로써의 성격과 보호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갖는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의 정부 결정에 따르면, 공기업들의 목표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에 기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8월에 공기업청장은 재정 경제산업 소속으로 이러한

11)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202쪽.

12)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위의 보고서, 206쪽.

정책을 감독하도록 임명되었다.¹³⁾

1. 공기업 통제수단 성격의 법령

프랑스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개의 상반적 요청이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첫째, 공기업 사업의 상공업적 성격에 따라 경영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상공업적 사업은 그 사업주체의 완전한 책임하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극단의 엄격한 감독조치는 필연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의식 결여사태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¹⁴⁾ 둘째,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는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방식이 있다. 사전적 감독은 주로 공기업 주체의 결정에 대한 국가의 승인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의 경영권이 정부에 이양 및 공기업의 공동경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¹⁵⁾

프랑스 공기업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1953년 8월 9일 데크레의 구성은 제 1권에 주요공기업들의 예산과 수입, 지출관리 및 투자와 이익금의 처리 등 경제 담당 장관과

이해관계 장관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¹⁶⁾ 또한 동 데크레에서는 직원의 신분, 정년퇴직 및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주요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부처 장관과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에 통보하고 이들의 승인을 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공기업 운영에 관한 규제적 수단으로써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¹⁷⁾ 프랑스 법인으로서 그 지위를 불문하고 공사형태의 공기업 또는 국가기관 등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통제기업목록작성 데크레」¹⁸⁾, 프랑스 정부 내 공영혼성자본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전」¹⁹⁾ 등이 있다.²⁰⁾

또한 프랑스 정부의 특성상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전력산업 공기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년에 전력부문의 경쟁도입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 백서를 발표하였고, 2000년에 「전력의 공공서비스 확장 및 현대화법」을 제정을 통하여 프랑스 전력산업 부문을 맡고 있는 공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EDF와 국유화되지 않은 배전사업자는 배

13) 한국조세연구원, “공기업 지배구조-2005년 이후 OECD 회원국에서의 변화와 개혁”, 2011, 7쪽.

14) 김동희, “프랑스 공기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2002, 153쪽

15) 김동희, 위의 논문, 154쪽.

16)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앞의 보고서, 212쪽.

17)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18) Décret n° “84-966 du 22 octobre 1984 instituant le répertoire des entreprises contrôlées majoritairement par l’Etat.

19) 자세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제1521-1조부터 제1525-3조 참조.

20) 성승재·고재중·권재열·길준규·전학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47쪽.

전설비의 운영자로 지정되며, EDF의 송전·변전 부문을 분리하여 송전설비 계통 관리 운영자로 EDF의 자회사인 프랑스송전망공사(Réseau de Transport d'Electricité: RTE)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업무를 EDF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²¹⁾

2. 전략적 분야에 대한 기업 보호에 관한 법령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프랑스의 전략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데크레(decret n° 2005-1739)을 2005년 12월 30일 제정하였다.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산업은 10개 산업으로써 카지노, 보안분야, 생명공학, 항생제 생산, 통신도청 자재, 정보시스템 안전, 암호, 민간/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국방 비밀시장, 군수산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사전 승인 없이 전략산업에 투자한 경우에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은 동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²²⁾ 이에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동 행위에 대한 정부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은 그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

법한 투자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²³⁾

IV. 시사점

프랑스 공기업의 구조적 성격은 정부가 관여하는 비중이 큰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변화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공기업 구조적 기능 중 정부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 중에 있지만, 여전히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큰 편이다.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에도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을 통하여 해당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관련 규제법령을 통하여 프랑스 공기업들을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프랑스 공기업들의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는 항상 프랑스 정부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움직임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프랑스 정부 내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향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는 프랑스 국민들의 공공성에 대한 애착이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에서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

21) 이창훈, “공기업 독점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78~179쪽.

22) 프랑스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 제151-3조 제3항 참조.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앞의 보고서, 114쪽.

들에 대해서는 민영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 내 모든 공기업들에 대해서 정부는 규제 및 관리·감독을 철저한 계획 하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계획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공기업 혁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2014년 11월 13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시키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와 우리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공기업 규제 방향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을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취지로써 정부가 공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은 최근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부채의 감축 및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 및 기능 수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능조정 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²⁴⁾ 최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률안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시키는 입장은 오히려 민간시장의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즉,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아울러 개정 법률도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조정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정책적 방향성의 목적을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들을 민영화 시킬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적 입장과 국민들이 받을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 적절성을 파악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배 호 성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원)

24)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자료집, 2014, 9쪽.

참고문헌

-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 김동희, “프랑스 공기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200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 제도, 2008.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자료집, 2014.
- 이창훈, 공기업 독점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성승재·고재종·권재열·길준규·전학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 한국조세연구원, 공기업 지배구조-2005년 이후 OECD 회원국에서의 변화와 개혁, 2011.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 I, 2010.
- Rémi Rouquette, Dictionnaire du droit administratif, Le Moniteur, 2002.
- INSEE, Rapport d'activité, 2013.
- INSEE, L'État actionnaire, rapport 2014.